

[상세보기 #2] 지역인재 상세내역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 상세내역

1.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

- 비수도권지역인재 :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대학(전문대학 포함)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중인 자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,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)

2.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(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)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* (예시) 단국대 천안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상명대 천안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3.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(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,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)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4)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
 - ①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
 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- ②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 - ③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-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④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《 예 시 》

1.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소재 대학교 1학년 재학·휴학중인 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 아님
2.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청소재 대학교에서 재학·휴학 중인 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
3. 전남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
4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, 사이버대학, 디지털대학,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 아님